

□ 채용시험(원서접수 등 관련)**Q A****시간선택제 응시자격과 시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시간선택제 응시자격은 “경력, 자격증, 학위”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절차는 “(1차)서류전형과 (2차)면접시험”으로 진행됩니다.

Q A**복수의 모집단위에 응시가 가능합니까?**

- 모집단위 중 한 곳에만 하나의 응시요건을 선택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모집단위(101번)에서 2개(경력, 자격증)의 응시요건이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A**현재 재직 중인 경우도 응시가 가능합니까?**

- 현재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요건에 해당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 후 경력 증빙서류 제출 시에는 재직 중인 경우는 재직증명서를, 퇴직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Q A**지금은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는데 응시할 수 있나요?**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증, 학위” 소지 여부 판단기준일은 최종 시험예정일(2019. 10. 22. 예정)입니다.
 - 따라서, 원서접수 단계에서 소지하지 않아도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증, 학위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A**우대요건 소지 여부 판단기준일도 응시요건과 동일한가요?**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서만 평가하기 때문에 응시요건과는 달리 원서접수 최종일(2019. 6. 3. 예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서접수를 하려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가입해야 하나요?

- 원서접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인터넷으로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하셔야 완료됩니다.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원서접수시 직접 입력한 사항)와 추가서류(원서접수시 첨부 파일로 업로드한 사항) 작성 내용이 다른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응시원서와 추가서류에 작성된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며, 서로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류사례 예시) 응시원서와 추가서류의 근무기관 부서명이 다름



추가서류 작성 서식의 모든 부분을 기재해야 하나요?

- 추가서류는 원칙적으로 응시자의 지원하는 모집단위 응시요건과 관련된 부분만 작성하면 되고, 그 외 부분은 선택사항(응시자 판단)임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서접수시 '지원동기'와 '직무수행계획서'를 표절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서' 항목은 별도로 표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표절 정도에 따라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응시원서와 추가서류 작성 시에는 작성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경력·재직·학위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며, 제출된 증빙서류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진위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기본서류 작성 시에는 증빙 가능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경력·학위·자격 중 복수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떤 요건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 1개 이상의 응시요건 충족 시 어떤 요건을 선택하는 것이 합격에 유리한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응시자가 선택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선택하지 않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적격으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추가서류) 제출 이후에 응시원서(추가서류)를 보완할 수 있나요?

-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취소 기간 중에도 취소만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기간 내에는 수정, 보완,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서류 첨부시 보안문서로 작성하여 시험실시기관에서 열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류 미제출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요건 중 '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관련분야 해당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경력과 담당예정 업무와의 관련성을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응시하여야 하며, '관련분야' 경력 인정여부는 서류전형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시험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은 심사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응시자들의 경력이 모집단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응시자의 경력·학위·자격이 응시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도 서류전형위원회를 통해 평가되는 것으로 인사혁신처에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드리지는 않습니다.
- 다만,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이후 진행되는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 검증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될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 요건 응시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을 했을 때 관련분야에서 재직(연구·근무)하지 않은 지 10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즉,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10년 내에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하고, 10년 내 관련분야 근무경력과 그 이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경력 기간(3년 ~ 6년)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따라서, 시험공고일이 2019.5.3.이므로 역산(초일 불산입)하면, 2009.5.2.에서 2019.5.2.까지 모집단위에서 제시하는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합니다.
 - 이때의 경력은 법인,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 ※ 법인 여부 확인 : 인터넷 등기(www.iros.go.kr) / 법인등기 열람



자격증 또는 학위 소지 후 일정경력이 필요한 경우(자격증+경력 / 학위+경력)에도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나요?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자격증(또는 학위)+경력”은 자격증 요건에 해당하므로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자격증 소지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고, 모집단위에서 제시하는 관련 분야 경력이어야 하며, 이때의 경력도 법인,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함) 경력이어야 합니다.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우 경력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 경력은 “주 9시간” 강의한 경우에 “주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각종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강의 시간 외에도 강의를 위한 연구 및 준비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40시간이 아닌 주 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경력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교원의 교수시간)
예시) 시간강사로 1년간 주 6시간 강의한 경우 1년 × (6시간/9시간) = 8개월 인정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 근무경력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비정규직이라도 관련분야 경력임이 서류전형에서 인정되는 경우 전임(전일제)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주 40시간 기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의 경력도 법인,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함) 경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전일제)근무 ⇒ 3년 인정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프리랜서 등)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 1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합니다.



증빙서류 제출시 이전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해 경력증명이 곤란한 경우,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으로 경력증명을 대체할 수 있나요?

- 이전 근무처에서의 경력 증명이 어려울 경우, 경력증명서 대신 '4대 보험 납입증명서*'와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텍스 및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를 함께 제출하여 갈음할 수 있으나, 세부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련분야 인정여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납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면접시험 종료 후 경력 조회 대상자는 합격자로 볼 수 있나요?

- 경력 조회는 합격자 결정을 위한 검증 단계이기는 하나, 경력 조회가 최종합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경력 조회는 합격대상자(선발예정인원, 후순위자 등)에 대하여 진행하는 최종 검증 단계로, 제출한 경력내용과 조회결과가 일치하고 관련 사항이 확인된 경우 면접시험 평정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 조회 대상자 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자와 전체 조회 대상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앞으로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시간선택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현재 각 부처(시험실시기관)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관련 정보는 각 부처 누리집이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주관 시험도 2020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성적은 공개하나요?

-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평정결과는 객관식 시험과 달리 관련법령에 따라 시험의 공정성, 시험위원의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례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대법원 2003.3.14. 선고 2000두6114, 대법원 2008.12.14. 선고 2008두8970 등



최종합격자에 대한 기본교육은 언제 실시하나요?

- 2019년도 시간선택제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기본교육은 2020년도 교육 일정이 확정되는 '19년 12월말 이후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2018년도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9년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2주간 “공직적응력 강화 및 공직가치 함양을 위한 기본교육”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충북 진천 소재)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제출 서류를 취합한 후 임용예정부처에 통보하게 됩니다.
- 통보를 받은 임용예정부처에서는 인력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용시기를 결정하므로 임용시기는 부처별로 상이합니다. 구체적인 임용시기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 임용예정부처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 제도(일반) 관련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기존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한가요?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40시간, 일8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정년(60세)이 보장되며 공무원연금이 적용됩니다.
- 다만, 승진·보수 등의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20시간이며, 임용권자는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을 5시간의 범위(15~25시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권자가 조정 가능한 주당 근무시간 범위를 15~35시간으로 개정 추진 중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원할 경우 근무시간, 형태를 조정할 수 있나요?

-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시간 또는 근무형태 조정을 희망할 경우 임용권자(인사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검토한 후 조정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임용된 후 전보가 가능한가요?

-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 임용되므로 공무원 임용령 제45조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이 경과하여야 전보가 가능합니다.



채용시험에서 인정된 '관련분야 경력'은 전부 호봉에 반영되니까?

- 경력경쟁채용시험 경력인정과 호봉인정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채용시험에서 '관련분야 경력'이 인정되었더라도 호봉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호봉인정 기준은 임용 이후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선발된 후 임용유예가 가능합니까?

- 민간의 유능한 경력자를 신속히 선발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이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제도의 목적이므로 임용유예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겸직이 가능합니까?

- 「국가공무원법」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임용예정기관의 기관장이 겸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외에 겸직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전문성 발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폭넓게 겸직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으로 새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개 또는 경력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금액을 총 급여로 지급 받습니다.

[기본급]

- ① 법령정보센터 사이트 (www.law.go.kr)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
- ② 일반직 공무원은 [별표 3], 연구사는 [별표 5]에서 확인 가능
→ 호봉은 경력 인정범위에 따라 달라짐
- ③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위 급여액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수당 지급액]

- ① 법령정보센터 사이트 (www.law.go.kr)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
- ②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③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지급방법·인정범위 등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취지상 초과근무는 지양하고 있음
- ④ 특수업무수당은 근무기간 5년 이하는 동일호봉 전일제공무원의 봉급월액의 5%,
5년 초과 시 8%를 각각 적용